

23.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1998. 12. 28, 법률 제5579호)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심의위원회에 국·공립대학의 교수를 참여시키고,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공무원은 국세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외부위촉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중 국·공립대학의 교수는 국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령 제53조제2항제2호).
- 나.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장, 당해 세무서의 5·6급 공무원 및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 당해 지방국세청의 3·4급 공무원 및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령 제54조의2).
- 다.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1천원에서 3천으로 상향 조정함(령 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단서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11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전단중 “제1항의”를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이 경우에”를 “이 경우”로 한다.

①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중 “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를 “예정신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 경우에는”을 “이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를 “상속세”로 한다.

제20조제11호중 “또한”을 “또는”으로, “소유주식금액”을 “소유주식수”로, “소유주식금액등”을 “소유주식수등”으로,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로, “발행주식총액등”을 “발행주식총수등”으로 하고, 동조 제12호중 “소유주식금액등”을 각각 “서유주식수등”으로, “발행주식총액등”을 각각 “발행주식총수등”으로 하며, 동조 제13호 단서중 “발행주식총액등”을 “발행주식총수등”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이 경우에”를 “이 경우”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이 경우에”를 “이 경우”로 한다.

제51조 전단중 “제44조”를 “제44조의2”로 하고, 동조 후단중 “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중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를 “풍부한 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로 하고, 동조 제14항중 “4급 공무원”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6장제2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2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②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④제53조제4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 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회의의 공개여부,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4항 내지 제14항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장제4절에 제6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8(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납세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규정한 신고 · 신

청 · 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65조의3중 “1,000원”을 “3천원”으로 한다.

제65조의7 본문중 “법 제85조의3제4항”을 “법 제85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수정”을 “수정 · 추가”로 하며, 동조 제3호중 “거래내용”을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 ·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호 및 제65조의2제7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